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9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병도, 김혜련,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의원(11명)

1. 제안이유

-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피해자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의 유형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으로는 신종 여성폭력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바,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 시행)이 제정됨.
- 이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범위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해자’의 정의에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나. ‘2차 피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 다.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제하고,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2차 피해 방지와 2차 피해 최소화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마.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권익담당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 · 연령 · 학력 · 혼인상태 · 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 · 발생유형 · 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13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법령

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제14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한 차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보관하고, 경찰·소방서·의료기관·학교·주민센터·복지관·관련 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민은 필요할 경우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보호를 위한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센터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5. 성희롱·성폭력에 관해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센터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